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등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18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등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5. 11.

다. 회 부 일 : 2026. 5.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등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자의 고용정보 및 연구개발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3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등)</u> <u>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u>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생략)	양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제2호·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집·보유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 2. 지원 대상자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우수사례의 발굴·확산) (현행 제13조의3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벌칙)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3조 및 제13조의2¹⁾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경력단절의 경우)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일례로²⁾,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26년도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분야 복귀를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재취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2026.10.22. 시행예정>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지원사업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24~2028)」의 2026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8개 중앙행정기관(000)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재취업)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 여성과학기술인 304명(예산액 72억 1,500만원) 및 2,150명(예산액 1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력단절 등 사업 현황>

사업명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재취업) 교육
주요 내용	(목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내용) 경력보유(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시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대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규모) 304명(‘26년 계획) * 예산 7,215백만원	(목적)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내용) 전문 교육훈련 취업역량 강화 세미나 (대상)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규모) 2,150명(‘26년 계획) * 예산 175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³⁾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함.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그러나,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동 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 및 연구 개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다만, 개정안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정보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5항⁴⁾에 따라 일자리 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의 이용은 가능하나, 이는 이미 파악된 사업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잠재적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는 구별됨. 따라서 특정되지 않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구직정보 등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사업종료 후 취업·경력복귀 여부 등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도 신청자와 수혜자의 개별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 부담이 발생하며, 미응답자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찰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와 연구개발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5)에 따른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가입 종별 및 소득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6)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수행 주체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 5)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의 설계·추진이 가능해지고,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 간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⁷⁾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공대상 정보의 범위가 실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공대상 정보로 사회보험·소득정보, 학교교육 및 고용·직업정보와 연구개발정보 등을 폭넓게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자료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는

7)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헌법적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념적 기초에 대해서는 주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들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99헌마513 결정 등)

개인정보의 범위가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임.

-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고용보험 가입·상실 정보,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 및 수행기관 정보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⁸⁾과 유사 입법례⁹⁾ 등을 고려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참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주요 판단 요소(법제기준과 실제, 2024.5. 국회사무처 법제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수행하려는 업무 목적의 정당성 여부
-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인지 여부
- 처리대상자, 처리사항 및 그 기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제공인지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 정보 항목 및 사유>

구분	필요 정보 항목	필요 사유
제1호 고용 관련 정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2) 고용보험 가입일·상실일 3)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 지원대상(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정확한 파악으로 사업의 효과적 추진기반 마련 · 사업 응모자의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행정 정보 공동이용으로 전환 함으로써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
	4) 고용사업장 정보	· 지원기관 별도의 추적조사 없이 지원대상의 취업 현황 파악할 수 있어 시간, 비용 절감 · 지원 종료 이후 경력복귀(혹은 경력유지) 파악 등 지속적 사업 성과 관리
	5) 여성과학기술인 개인 정보(연락처)	·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정책과 지원사업을 직접 안내 ·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 정보 안내
제2호 연구개발 정보	1)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 파악을 통해 과학기술인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파악 · 사업 응모자의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행정 정보 공동이용으로 전환 함으로써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
	2) 연구개발 수행기관 정보	· 지원기관 별도의 추적조사 없이 지원대상의 연구 개발 현황 파악할 수 있어 시간, 비용 절감 · 지원 종료 후 과학기술분야로의 경력복귀(혹은 경력유지) 파악 등 지속적 사업 성과 관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둘째,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누설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벌규정의 체계정당성¹⁰⁾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2의 규정을 둘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10)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같은 법규범 내 또는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법규범의 구조·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말한다.(「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54

- 안 제13조의3제2항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사업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없는 제공 등을 이미 금지¹¹⁾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처벌대상 및 법정형이 중복됨.
- 특히 우리나라의 형벌규정은 동일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개별 법률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 등 체계정당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¹²⁾,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누설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2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2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기관 간 정보제공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¹³⁾에서는 정보를 제공

12) 「법제기준과 실제(2024.5.)」 p762~763 「형법」 또는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형벌규정의 체계정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적용 관계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향후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